

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·운영기준(제13조의5제1항 관련)

1. 설치 의료기관
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

2. 시설·운영기준

가.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다른 시설(공간)과 독립·구별되도록 설치·운영해야 한다.

나. 병상: 입원 병동 또는 낮병동(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는 병동)에 5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입원 병동에는 3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.

다. 외래 진료실: 재활의학과를 3실 이상, 소아청소년과 및 치과를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.

라. 재활 치료실: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열전기치료, 언어치료, 일상생활 동작훈련, 인지치료, 연하(삼키기)훈련 및 임상심리치료 등을 위해 물리치료실, 작업치료실, 열전기치료실, 언어치료실, 수치료실, 조기집중치료실, 재활심리치료실, 보조기제작체험실, 로봇치료실 및 호흡재활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.

마. 검사실: 진단·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선실, 임상병리실, 근전도검사실, 근골격계초음파검사실 및 심폐기능검사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.

바. 그 밖에 사회사업실, 교실(병원학교), 교육실 및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하며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른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.

3. 인력기준

가. 의사: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, (소아)치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
나. 간호사: 환자 수 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
다. 의료보건의료직: 물리치료사 20명 이상, 작업치료사 16명 이상, 언어재활사 4명 이상, 사회복지사(1급)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, 임상심리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 및 의지보조기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라. 사무직: 원무, 심사,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7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마.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·운영해야 한다.

4. 장비기준

물리치료실·작업치료실·열전기치료실·언어치료실·수치료실·재활심리치료실·보조기제작체험실·방사선실·심폐기능검사실에는 대동작기능평가도구(GMFM), 발달평가 도구,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, 연령별·영역별 언어평가도구, 전기자극치료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.

5. 「의료법」 등 의료기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.

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여건이나 의료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·운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